

☆ [2024년 11월 3일 오후 3시_김정행] 위더스웨딩그룹 안양 계약금 환불관련 협조 요청 메일

보낸사람 김정행 <qlgodri9898@naver.com>

받는사람 wta2200@naver.com

숨은참조 theou12@naver.com rla1992125@naver.com

2024년 3월 18일 (월) 오후 2:47

첨부 1개 97KB 모두저장 | 이미지로 보기

! 파일 저장 시 바이러스 검사 자동 수행

 32. 예식업(1개 업종).pdf 96.6KB

수신: 웨딩그룹위더스 안양 이수정본부장님

발신: 김정행

안녕하세요.

작년 2023년 10월 29일에 상담했던 김정행입니다.

우선 친절하게 상담해주신 본부장님께는 감사하다라는 말을 먼저 올립니다. :)

본부장님과 예식 계약 상담 후 위더스의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2024년 11월 3일 오후 3시 메리엘홀로 계약하였는데...

계약 이후 안양 위더스에 대한 안 좋은 후기들과 돌잔치 진행하시는 분들이 신부 대기실에서 사진 찍는 모습, 곳곳에 설치 되어있는 답례품 광고 배너(계약당시 답례품은 필수사항 X), 스냅사진 원본 15만원 안내받았는데.. 수정비 15만원 추가 비용 등등 이외에도 신경 쓰이는 부분이 많아 예식 진행하는 데 계속 마음에 걸려 유선으로 연락드리기에 보다는 정중하게 메일로 기재하여 요청드리는 게 맞다고 판단되어 메일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계약금 환불 요청드리고자 메일 작성 하였으니 긍정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래에 기재 드린 내용 확인 후 긍정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우선... 계약서 내용에

이용자의 책임으로 계약일로부터 당일 이후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계약금은 환불되지 아니"한다.

라는 특약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이라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예식장이용 표준약관』제6조(계약의 해제) 제3항에서는

"이용자가 자신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그 손해 배상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릅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비자가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통보하면

계약금을 환급하도록 되어 있고,

예식 예정일로부터 150일 전까지 계약해제를 통보한 경우에도

계약금을 환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밖에 예식예정일로부터 60일 전까지는 총비용의 10%를 배상하고

계약금 환급하는 등 기간에 따라 달리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담&계약일자 : 2023년 10월 29일

계약일로부터 계약 취소 의사를 밝힌 오늘은 **142일차** 입니다. (**150일 이내** 입니다.)

상호 합의를 위하여 메일로 계약금 환불 요청 드리오니,

저희 환불 요청에 따라 계약금을 전액 환불 해주신다면 웨딩홀에 대한

긍정적인 후기를 블로그와 SNS에 각각 후기를 남기고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 어느 누구에도 계약금 반환에 대한 얘기를 누설 하지 않겠습니다.

긍정적인 답변 회신을 기대하겠습니다.

계약금 결제는 카드로 하였으나,
방문이 필요하다하시면 방문하겠습니다, 환불 계좌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계좌로 환불 부탁드립니다.

김정행 (신한은행 110-374-174092)

감사합니다.

M. 010-7412-0593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유선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참고 자료]

한국소비자원 > KCA소개 > 사이버홍보실 > 공지사항 > 상세보기 - Whale
kca.go.kr 한국소비자원 > KCA소개 > 사이버홍보실 > 공지사항 > 상세보기

한국소비자원 문서뷰어 | 32. 예식업(1개 업종).pdf

[Redacted]	2)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예식일예정일로부터 150일전까지(~150) 계약해제 통보 시	o 계약금 환급	* 예식일에 대체 계약이 발생했을 경우 계약금 환급 및 위약금 청구를 금지함
	- 예식일예정일로부터 60일전까지(149~60) 계약해제 통보 시	o 계약금 환급 및 총비용의 10% 배상	
	- 예식일예정일로부터 30일전까지(59~30) 계약해제 통보 시	o 계약금 환급 및 총비용의 20% 배상	
	- 예식일예정일로부터 29일전 이후(29~당일) 계약해제 통보 시	o 계약금 환급 및 총비용의 35% 배상	

-김정행 드림-

32. 예식업(1개 업종)

예 식 업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1)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예식일예정일로부터 150일전까지(~150) 계약해제 통보 시 - 예식예정일로부터 60일전까지(149~60) 계약해제 통보 시 - 예식예정일로부터 30일전까지(59~30) 계약해제 통보 시 - 예식예정일로부터 29일전 이후(29~당일) 계약해제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 계약금 환급 및 총비용의 10% 배상 ○ 계약금 환급 및 총비용의 20% 배상 ○ 계약금 환급 및 총비용의 35% 배상	
2)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예식일예정일로부터 150일전까지(~150) 계약해제 통보 시 - 예식예정일로부터 60일전까지(149~60) 계약해제 통보 시 - 예식예정일로부터 30일전까지(59~30) 계약해제 통보 시 - 예식예정일로부터 29일전 이후(29~당일) 계약해제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 계약금 환급 및 총비용의 10% 배상 ○ 계약금 환급 및 총비용의 20% 배상 ○ 계약금 환급 및 총비용의 35% 배상	* 예식일에 대체 계약이 발생했을 경우 계약금 환급 및 위약금 청구를 금지함
3) 소비자의 청약철회 -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 청약철회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는 계약체결에 대한 숙려기간으로 보아 예식 예정일로부터의 잔여일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청약을 철회할 수 있음(계약금 환급 및 위약금 청구 금지)
4) 부대품 및 부대시설 미사용으로 인한 부당대우	○ 예식비용금액 환급	
5) 사업자의 고의·과실로 부대품 및 부대시설 미이용	○ 이용요금의 배액 배상	
6) 예식사진 관련 피해 - 이용자의 동의 없이 촬영된 사진 - 촬영 의뢰한 사진의 멸실 또는 상태 불량	○ 사진금액 환급 ○ 다음 2호 및 3호에 따라 손해배상	

예 식 업		
분 쟁 유 형	해 결 기 준	비 고
<p>7) 1급감염병 발생으로 사업자 또는 이용자가 계약의 변경 또는 해제를 요청한 경우</p> <p>- 예식시설 전체에 대해 시설폐쇄·시설운영중단 등 행정명령이 발령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예식계약체결 이후 예식예정지역·이용자의 거주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p> <p>· 예식계약 내용 변경 시 · 예식계약 해제 시</p> <p>- 모임·행사 등에 대한 집합제한(시설이용·입장인원 제한 등)·시설 일부 운영중단 등 행정명령이 발령되어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p> <p>· 예식계약 내용 변경 시 · 예식계약 해제 시</p> <p>- 예식계약 체결 이후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되고 방역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를 권고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p> <p>· 예식계약 내용 변경 시 · 예식계약 해제 시</p>	<p>○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 변경</p> <p>○ 위약금 없이 계약금 환급</p> <p>○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 변경</p> <p>○ 계약금 환급 및 위약금 40% 감경</p> <p>○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 변경</p> <p>○ 계약금 환급 및 위약금 20% 감경</p>	<p>*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상 1급감염병을 의미</p> <p>* 예식계약체결 이후 계약서에 명시된 서비스에 대해 이미 이행한 계약내용을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입증한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공제하고 환급하며, 공제금액이 계약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 이용자가 사업자에게 지급함((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p> <p>* 예식계약 내용 변경이란 예식일시 연기, 최소보증인원 조정 등 계약내용 변경에 대해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것을 말함</p> <p>* 시설 일부 운영중단이란, 예식장 시설(예식홀, 연회장 부대시설 등) 중 일부가 운영 중단되는 경우를 말함</p>
<p>1. 총비용이라 함은 연회비용(연회음식, 음주류 등)과 예식비용(예식장 대관료, 부대시설·부대서비스·부대물품 등 이용요금, 신부드레스, 화장, 사진·비디오 촬영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계약 시 정한 실거래금액을 말함.</p> <p>2. 소비자가 주요사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재촬영을 원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재촬영하되 전부를 재촬영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촬영요금(이하 계약에서 정한 촬영요금)을 소비자에게 지급하며, 주요 사진의 일부만을 재촬영하는 경우에는 촬영요금의 배액을 지급함.</p> <p>3. 소비자가 주요사진의 재촬영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촬영요금의 3배액을 소비자에게 지급함.</p> <p>* 주요사진이라 함은 주례사진, 신랑·신부 양인사진, 신부독사진, 양가부모사진, 가족사진, 친구사진을 의미함.</p>		